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제25339호, 2014.4.29., 타법개정]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25432호, 2014.6.30., 일부개정]
제8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 ~ ⑨ (생략) <신설> <신설> <신설>	제8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. 그 밖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 1. 제1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.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,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(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)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.